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50

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:정일영·한정애·김영환

강유정 · 임호선 · 박상혁

임광현ㆍ이학영ㆍ허 영

한민수 · 김문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내란죄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화폰 서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및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·수색에 나선 바 있음.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및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.

현행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,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.

이에 수사기관이 「형법」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압수·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,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11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0조제2항 중 "境遇"를 "境遇(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수사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第110條(軍事上 秘密과 押收) ①	第110條(軍事上 秘密과 押收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前項의 責任者는 國家의 重	②		
大한 利益을 害하는 <u>境遇</u> 를 除			
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	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		
한다.	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수		
	사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		
	아니한다)		